대외비

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

2016. 4. 4. 기획조정실

1. 추천 과정

▣ 3. 14. 코트넷에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위원 추천 절차 안내

● 고등법원장이 권역별·직급별 배정인원에 맞추어 후보자 단수 추천
⇨ 법원행정처장이 추천된 후보자 위촉

● 단수 추천으로 정책 결정한 이유

- ① 고등법원장의 위원 후보자 복수 추천 후 법원행정처장이 선별 위촉할 경우 위원 선정을 행정처가 좌우한다는 이미지 구축될 우려

- ②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외양을 보여주는 전향적인 자세 필요 ⇨ 핵심 그룹이 구축하고자 하는 '어용', '들러리', '의례적 기구' 프레임 탈피

- ③ 법원문화개선위원회,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안건의 성질상 强性 위원이 위촉되더라도 추후 설립될 다른 위원회(사법정책기획위원회, 법관윤리심의위원회)보다 위험성이 弱함 ⇨ 부작용은 안건 선정으로 통제 가능

☑ "사법행정위원회 출범에 관한 안내 말씀" (3. 14.자 코트넷 공지글)

▶위원은 고등법원장이 관내 법관 중에서 추천한 분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게 됩니다.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, 위원회에 다양한 지역과 보직의 법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**각 고등법원장이 추천할 법관의 수와 보직을 위원회별로 안배**하였습니다. **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**

▶고등법원장들께서는 4. 1.까지 관내 법관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수, 성별, 해당 위원회의 소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원 위촉절차와, 위원장 지명절차를 진행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▣ 3. 16. 각 고등법원에 위원 추천 의뢰하는 공문 발송

▣ 3. 28.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

●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

- 1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
  - (예) 우리법연구회, 인권법연구회, 노동법연구회 등 소속 법관
- 2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
- 3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

☑ 고등법원장에게 추천한 법관

▶**[법원문화]** 윤○○, 문○○, 정○○ 등, **[재판제도]** 김○○, 최○○, 장○○ 등

▣ 4. 1. 각 고등법원에서 위원 후보자 추천

● **[1서울고법]** 관내 지법에서 **45명 추천**받아 그 중 **15명 추천**

- **관내 지법**에서 서울고법에 추천할 때 위원회 특정하지 않았으나, **서울고법**이 법원행정처에 추천할 때에는 **위원회 특정**
  - 단, 희망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
- **관내 지법 직급별 판사회의**에서 추천한 법관은 **서울고법**에서 **가급적 추천**

● **[2대전고법]** 관내 지법에 배수로 추천해도 좋다고 하였으나, **관내 지법**에서 **대전 권역에 배정된 인원만큼만 추천**해 와서, **그대로 5명 추천**

- **관내 지법 직급별 판사회의**는 개최되지 않았음

● **[3대구고법]** 관내 지법에서 **8명 추천**받아 그 중 **4명 추천**

● **[4부산고법]** 관내 지법에서 **12명 추천**받아 그 중 **6명 추천**

- **부산지법**의 경우 **직급별 판사회의** 개최되었음

● **[5광주고법]** 관내 지법에서 **7명 추천**받아 그 중 **4명 추천**

2. 추천 결과

가. 법원문화개선위원회

1	(사진)	이○○	법원/직급/재판부 (이하 열 삭제)	기수 (생년) (이하 열 삭제)
2	(사진)	윤○○		
3	(사진)	김○○		
4	(사진)	문○○		
5	(사진)	문○○		
6	(사진)	최○○		
7	(사진)	김○○		
8	(사진)	류○○		
9	(사진)	정○○		

10	(사진)	김○○	법원/직급/재판부 (이하 열 삭제)	기수 (생년) (이하 열 삭제)
11	(사진)	권○○		
12	(사진)	하○○		
13	(사진)	이○○		
14	(사진)	류○○		
15	(사진)	경○○		
16	(사진)	류○○		
17	(사진)	김○○		

나. 재판제도발전위원회

1	(사진)	김○○	법원/직급/재판부 (이하 열 삭제)	기수 (생년) (이하 열 삭제)
2	(사진)	구○○		
3	(사진)	이 ○		
4	(사진)	이○○		
5	(사진)	장○○		
6	(사진)	조○○		
7	(사진)	유○○		
8	(사진)	신○○		
9	(사진)	박○○		

10	(사진)	홍○○	법원/직급/재판부 (이하 열 삭제)	기수 (생년) (이하 열 삭제)
11	(사진)	송○○		
12	(사진)	박○○		
13	(사진)	윤 ○		
14	(사진)	장○○		
15	(사진)	백○○		
16	(사진)	류○○		
17	(사진)	이○○		

3. 분석

가. 법원문화개선위원회

구분	서울	대전	대구	부산	광주
고등부장		이○○(22)			
지법부장 고법판사	윤○○(24) 문○○(26)	문○○(27)	김○○(29)	김○○(25)	최○○(28)
고법/지법배석 단독판사	류○○(32) 정○○(32) 권○○(36) 류○○(39) 류○○(40)	경○○(39)	하○○(36)	이○○(36) 김○○(41)	김○○(36)

▣ **현황**

- 지법부장 이상 7명 v. 단독판사 이하 10명
  - [고법부장 1명, 지법부장급 6명] v. [단독판사급 6명, 배석판사 4명]
- 남성 10명 v. 여성 7명

▣ **문제점**

- **36기 법관 편중 ⇨ 4명**

나. 재판제도발전위원회

구분	서울	대전	대구	부산	광주
고등부장	김○○(17)				
지법부장 고법판사	이○○(27) 조○○(28)	구○○(24)	유○○(29)	이○(26)	장○○(28)
고법/지법배석 단독판사	신○○(33) 박○○(34) 홍○○(35) 송○○(36) 류○○(41)	이○○(41)	윤○(38)	박○○(37) 백○○(39)	장○○(39)

▣ **현황**

● 부장판사 이상 7명 v. 단독판사 이하 10명

- [고법부장 1명, 지법부장급 6명] v. [단독판사급 6명, 배석판사 4명]

● 남성 11명 v. 여성 6명

▣ **문제점**

● **여성 부장판사 없음**

● **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**

- [진보] 이○○, 장○○, 유○○

- [일반] 구○○, 이○, 조○○ ☞ **구○○, 이○ 부장판사**가 **强性**이라는 평가

다. 총평

1) 긍정적 요소 (총론에서는 성공적)

▣ **1 핵심 그룹의 공세 선제적으로 차단**

● **핵심 그룹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**이 충분히 추천되었음 ☞ 핵심 그룹은 최소한 '위원 구성 문제'에 관한한 더 이상 사법행정위원회를 폄하할 명분 없음

☑ 핵심 그룹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 **[법원문화]** 윤○○, 문○○, 김○○, 정○○, 류○○ **[재판제도]** 김○○, 이○○, 장○○, 유○○, 홍○○

▣ **2 흥행 요소 구비 ⇨ 위원회 출범 의의 고양**

● 법관 사회에서 **인지도 높은 법관**이 위원으로 참여 ⇨ 사법행정위원회 **흥행에 도움**

☑ 법관 사회에서 인지도 높은 법관 ▶ 문○○, 류○○ 등

2) 부정적 요소 (각론에서는 일부 보완 요소 발생)

▣ **1 고등법원장 단수추천 ⇨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 부존재**

● **기수, 성별 균형**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(지역, 직급 균형은 반영 가능)

- 법원문화연구회의 경우 **일부 기수 편중 현상** 발생 ☞ **36기 4명**

● **부적격자** 배제 불가능

▣ **2 이른바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이 적음**

● 특히 **'재판제도발전위원회'**의 경우가 문제됨

- **[법원문화] 이○○, 윤○○** 부장판사의 역할 기대 가능함

- **[재판제도]** 김○○, 이○○ 부장판사가 **어느 정도 역할할지**가 관건

▣ **3 특정 권역의 고등법원장이 추천한 고등부장이 사실상 곧바로 위원장이 되는 결과**

● (예) 서울고등법원장 ⇨ 김○○ 부장판사 추천 ⇨ 법원문화개선위원장

● (예) 대전고등법원장 ⇨ 이○○ 부장판사 추천 ⇨ 재판제도발전위원장

4. 개선 방안

가. 단기

1) 특정 기수 중복 현상 해결

▣ **가능한 방안**

● [1안] 위원회간 위원 교체

- **법원문화개선위원회**의 **36기 4명** 중 **1명**을 재판제도발전위원회와 교체

  ▪ [서울고법] (법원문화) 권○○ ⇔ (재판제도) 송○○, 홍○○, 신○○

  ▪ [대구고법] (법원문화) 하○○ ⇔ (재판제도) 윤○

- [부산고법] (법원문화) 이○○ ⇔ (재판제도) 박○○, 백○○
- [광주고법] (법원문화) 김○○ ⇔ (재판제도) 장○○

● **[2안] 위원 추가 추천 요청**

- 36기 위원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, 대구, 부산, 광주고등법원장에게 31기, 33기, 34기, 37기, 38기 중 각 1명의 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
  - 31기는 위원이 전혀 없음, 33, 34, 37, 38기는 재판제도에 1명만 있음

▣ **검토의견 ⇨ 위원회간 위원 교체**

● 2안(위원 추가 추천 요청)의 경우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우려 존재

- **출범 초기 단계**에서 **법원행정처장**이 **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외양**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등법원장 단수 추천으로 정책 결정한 상황
- 위원 추가 추천을 요청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위원 추천에 깊게 관여한다는 오해 발생 가능

● **1안(위원회간 위원 교체)**의 경우 아무런 **문제 발생 소지 없음**

- 서울고등 권역에서 **지방법원장**이 고등법원장에게 위원을 추천할 때 **'위원회'를 특정하지 않았음** ⇨ 각 **위원회**는 **고등법원장이 임의로 정한 것**임
- **법원행정처장**이 **특정 기수 편중 현상**을 **해결**하기 위해 고등법원장이 정한 소속 위원회를 **일부 수정**하는 것에는 문제 발생할 소지 없음

2)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 확보

▣ **가능한 견해**

● **고등법원장에게 부장판사급 위원 1명씩 추가 추천 요청**

- 교체 대상 후보군
  - [재판제도] 조○○, 구○○, 이○ 부장판사
  - [법원문화] 최○○ 부장판사(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)

- 추가 추천 후보군
  - 황○○, 호○○ 부장판사, 신○○ 고법판사 등

▣ **검토 의견 ⇨ 현상 유지**

● 부장판사급 위원 추가 추천 요청을 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장의 추천권 행사에 깊게 관여한다는 오해 발생 가능

● **법원문화개선위원회**, **재판제도발전위원회**의 경우 **예민한 안건**이 상대적으로 **적음 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낮음**

나. 중장기

1) 기본 방향

▣ **초기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문제점 보완**

● 특정 기수 편중 현상 해결 위해서는 위촉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재량권 행사 불가피

● 추후 출범할 **법관윤리심의위원회, 사법정책기획위원회**의 경우 **초기 출범한 위원회(법원문화개선위원회, 재판제도발전위원회)**와 달리 예민한 안건이 많음 ⇨ 특정 성향 판사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 존재

▣ **위원 추천 과정에서 지방법원장, 고등법원장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**

● 법원장이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에게 위원 추천을 포괄 위임하는 것은 지양 ⇨ 판사회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, 위원 추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장이 해야 함

2) 구체적 개선 방안

▣ **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**

●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장에게 위원을 **단수로 추천**할 경우, **지방법원의**

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관이 그대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음

- (예) 대전고등법원의 경우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장에게 단수 추천

▣ **법원행정처에서 위원 후보군(Pool) 마련하여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**

● 발언력이 강한 특정 성향 법관이 위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피해야함 ⇨ ① 진보 성향 법관 후보군을 사전 검토하였듯, ② 이른바 주류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 후보군도 사전 검토하여 대항마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

▣ **고등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2배수 추천**

● 각 고등법원장이 단수 추천한 결과 ① 지역, 직급 균형은 반영 가능하나, ② 기수, 성별 균형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, 실제로도 특정 기수 편중 현상이 발생하였음 ⇨ 1 기수, 성별 안분 및 2 대표성 확보에서 중대한 문제점 발생

● 1 기수, 성별 안분 및 2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으로부터 2배수 정도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불가피 ⇨ 추가로 출범할 법관윤리심의위원회, 사법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위와 같은 방침 적용

▣ **위원회 구별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, 법원행정처장이 소속 위원회 변경 가능**

▣ **고등부장판사는 모든 권역에서 법원행처장에게 1명씩 추천**

● 특정 권역에서 추천한 고등부장판사가 곧바로 위원장이 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있음 ⇨ 법원행정처장의 재량권 확보 <끝>